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상사례 보고 서식 변경 및 용어 수정을 위해 「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개정고시 등)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」 일부 개정고시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국방부장관(보건정책과장), 법무부장관(소년보호과장), **법무부장관(의료과장)**, 보건복지부장관(약무정책과장), 보건복지부장관(보험정책과장)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한국병원약사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

주무관 **박예정** 사무관 **박선임** 의약품안전평가 전결 2023.3.28.
과장 직무대리 **이인선**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2115 (2023. 3. 2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715 팩스번호 043-719-2700 / pyj9786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